

더큰 아산
행복한 시민

(2021년 상반기)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 주신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함께 하기 위해 찾아주신 아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시의회의결을 거쳐 5월에 제정되었고, 조례 규정의 절차에 따라 위촉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최초로 상근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홍보·안내 활동·현장 상담에 집중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초기 대시민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아산시 전광판 홍보, 언론매체 홍보, 아산시홈페이지 첫화면(민원)에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수정작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2월에 기획 준비하여 3월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홍보 안내 및 고충민원 현장 상담을 격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시민 홍보활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적극 참여, 아산시 의회의 관심과 협조, 아산시의 적극 지원 속에서 2021년 7월 말 현재 접수 처리된 고충민원이 53건입니다. 고충민원 중 접수 유형으로 분류하면 방문 20건, 홈페이지와 이메일 접수 7건, 우편 및 팩스 2건, 읍·면·동 현장 상담 24건으로 다양하게 접수되었고, 전화 문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청 분야는 주택건축 분야 20건, 교통도로 14건, 환경위생 4건, 재정 세무 3건, 산업농림 3건, 상하수도·보건복지·행정일반 각 2건, 그리고 교육문화, 공원녹지·기타 분야가 각 1건씩으로 주택건축, 교통도로 분야가 많으며, 시민 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고충민원 처리 현황은 시정권고·의견표명이 7건, 합의조정이 3건, 상담안내가 38건, 이송·이첩이 3건, 각하 1건, 조사진행이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란 ?

시민옴부즈만, 특히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은 아직 초기여서 시민들에게는 많이 생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이란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시민권익보호제도”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구제 기능을 지방에서 시행” 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달리 시민의 경제적 부담 없이 높은 접근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로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에 대하여 1차로 시민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담, 조사 처리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해소하고, 권익구제를 통하여 시민들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들의 시민옴부즈만 제도 이해를 돕고자 중간보고를 겸하여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21. 8.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신동택, 이상득

목 차

I 옴부즈만 제도소개

1. 옴부즈만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11
2. 시민옴부즈만 소개	18
3. 옴부즈만 기능	19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21

II 옴부즈만 초기활동

1. 시민옴부즈만 제도 초기홍보	29
2. 시 홈페이지 정비	33
3.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37

III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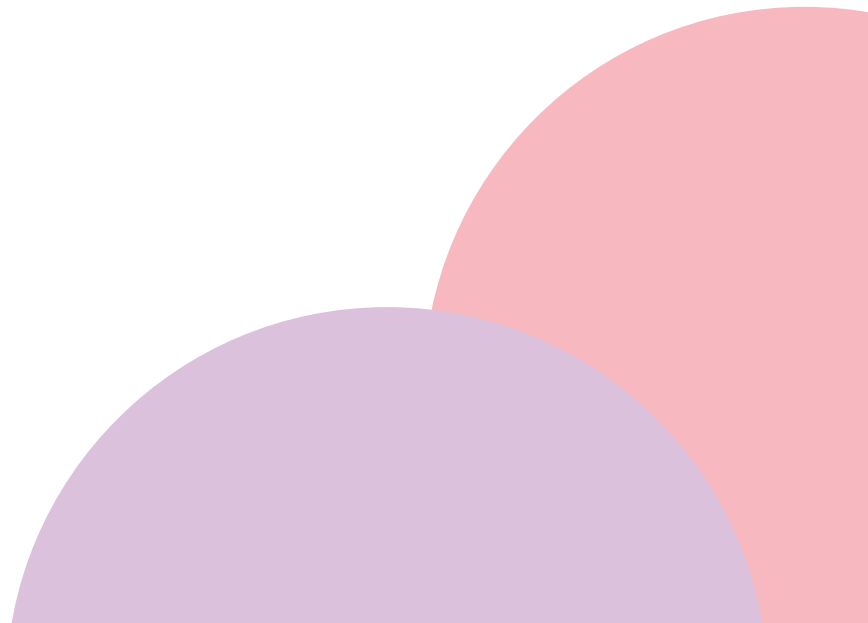
1. 고충민원 접수 · 처리 현황	55
2. 시정권고 사례	57
3. 의견표명 사례	61
4. 합의조정 사례	76
5. 상담안내 사례	94
6. 기각(각하) 사례	99

IV 참고자료

1. 보도자료	105
2.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0
3.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15
4.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17



I **옴부즈만 제도소개**

1. 옴부즈만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시민옴부즈만 소개
 3. 옴부즈만 기능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 

I.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임.

□ 도입배경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시민의 권리 침해, 불편, 부담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부작위 포함)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정 견제·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

□ 옴부즈만 운영의 법적 근거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결정 내용을 받은 경우 해당 권고, 의견표명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권고, 의견표명 등에 따른 통보내용을 시의회, 시장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

□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 주요 기능(지방옴부즈만의 권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근거)

- 지방옴부즈만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 관계),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91조(과태료)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와 행정 제도개선 등의 역할 수행(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 수행)
-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결정 내용을 받은 행정기관은 해당 권고·의견표명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요구권, 시민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의회 등에 대한 보고권 등 사실상의 집행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7조)
-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지방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그리고 지방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력을 받을 수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4조, 지방옴부즈만 운영안내서 29쪽)
- 지방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 지연시킨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91조 제3항)

□ 옴부즈만 설립 운영의 4대 원칙

1. 독립성

- 독립성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되기 위한 핵심적 정의 원리임. 독립성에는 기구의 독립(권력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되며 충분한 위상 확보 필요), 기능의 독립(외부 압력에 자유로워야 하며 옴부즈만 결정을 위해 충분한 조사, 접근 등의 권한 부여는 전제조건, 충분한 예산 필요), 법적지위(4년임기 보장, 보수, 선임절차 등)와 관련한 인적 독립이 필요함.

2. 공정성

- 옴부즈만 개념의 가장 핵심으로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정치적 활동, 고용 및 사업관계와 거래활동을 삼가야 하고 옴부즈만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피해야 함

3. 비밀보호

- 옴부즈만은 통상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비밀보호를 할 수 있음. 정보의 보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하게 보호받는 것도 있으며, 옴부즈만의 재량에 의해 공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음.

4. 신뢰성 있는 심리 절차

- 옴부즈만은 법·행정·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함. 모든 조사와 민원을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기에 비공식적인 조사활동을 병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대행 옴부즈만(조사관)에게 권한 부여 가능. 옴부즈만은 충분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전자기록 포함 정부행정 문서, 파일, 시설 등 조사자의 역할로 별도의 통지 없이 기관·시설에 출입,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필요).
- 옴부즈만은 심의결과 권고, 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

□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조치의 경우 면책 대상

-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2019. 3. 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련, 그 중「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이 되도록 규정 개정 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19.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행정 면책 규정 마련을 요청함 {※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 행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83호, 2019. 6. 25., 제정)」제3조}
-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30969호, 2020. 8. 25, 일부개정)」제1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 아산시의 경우「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960호, 2020. 3. 16., 제정)」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제4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아산시 시민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읍부즈만의 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근거한 아산 시민옴부즈만의 결정에 따른 집행은 해당 지자체의 적극행정으로 감사면책 대상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규정)

□ 추진경과

- 2020. 4. 3. 아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김희영 의원)
- 2020. 4. 20. 아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조례’ 통과
- 2020. 4. 24.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례’ 의결
- 2020. 5. 14.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8. 11. 아산시의회 제4차 의원회의 보고(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2명 추천)
- 2020. 9. 3.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원추천 의결(윤원준 의원, 김영애의원)
- 2020. 9. 8.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
- 2020. 10. 27.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개최
- 2020. 12. 2. 아산시의회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가결
- 2020. 12. 27. 아산시 초대 시민옴부즈만 (이상득, 신동택) 위촉
- 2021. 1. 1.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실 개소

□ 아산시 제1대 시민옴부즈만(2021. 1. 1. ~ 현재)

(대표) 시민옴부즈만 신동택

- 위촉일: 2020.12. 27.
- 위촉기간: 2021.1. 1.~ 2022.12.31.
- 임 기: 2년(1회 연임)
- (「부패방지권익위법」제33조 위원 임기 4년)
- 주요경력
- 前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 근무일: 월·화·수

**시민옴부즈만 이상득**

- 위촉일: 2020.12. 27.
- 위촉기간: 2021.1. 1.~ 2022.12.31.
- 임 기: 2년(1회 연임)
- (「부패방지권익위법」제33조 위원 임기 4년)
- 주요경력
- 前 아산시 공무원
- 근무일: 수·목·금



※ 시민옴부즈만은 독립기구로 업무수행

옴부즈만 사무국 : 지원인력(공무원) 1명

□ 주요기능

- 지방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내지 제54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9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국민권익위원회와 동등한 권한 부여)**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
-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지방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 상호 간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지방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력을 받을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54조)
- 지방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 지연시킨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1조 제3항)

□ 옴부즈만 제도의 장점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한 업무처리와 시민의 접근성이 높아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의회 기능을 보강해주며, 경제적 부담이 없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주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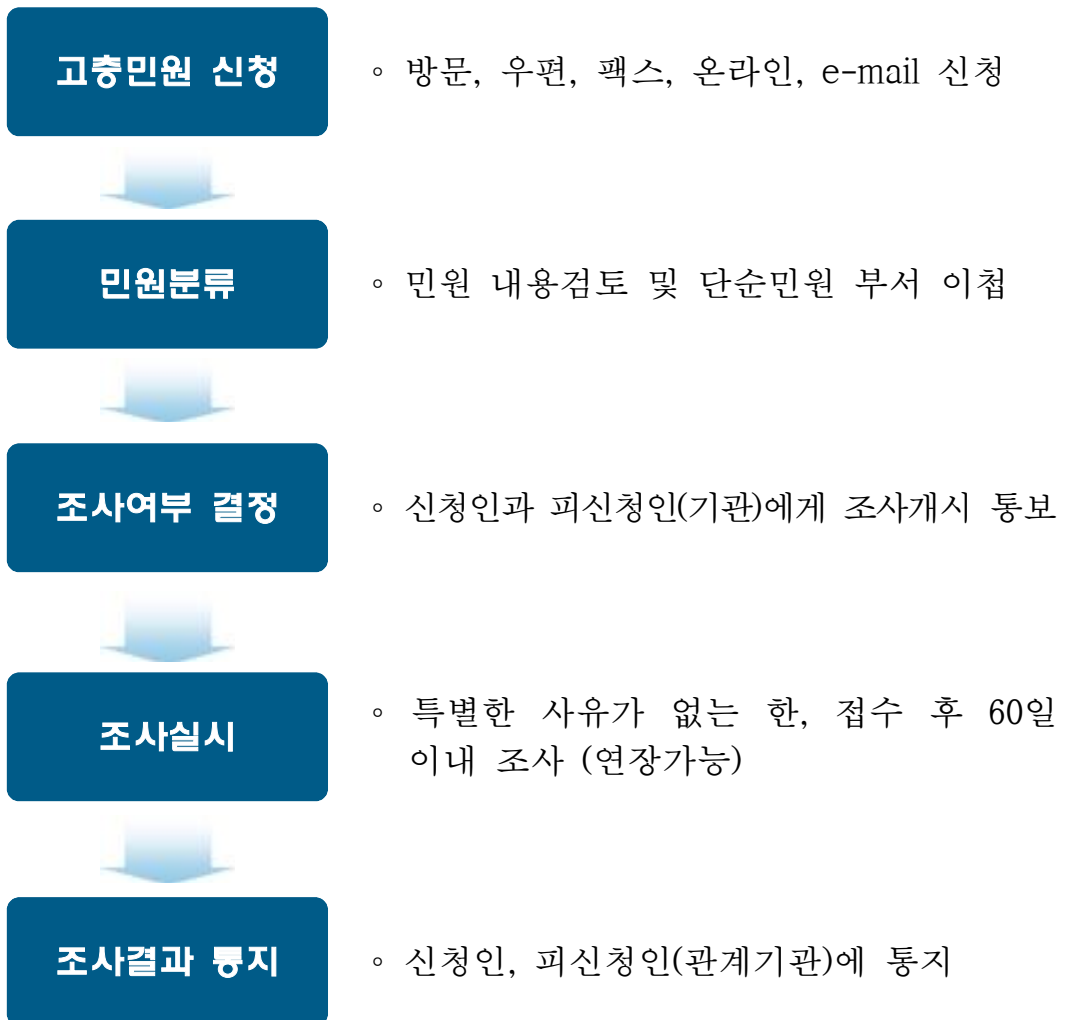
□ 읍부즈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 비교

구분	읍부즈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성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기간	제한없음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소극적 행위, 불편·부담 등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 접근성 용이	접근성 매우 어려움
비용	무료	행정소송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	경제적 부담 높음
구속력	언론공표, 의회 보고 등 간접강제로 실질적 구속력	기속력 (행정청에 대하여 구속력 인정)	기판력 (법원, 행정청, 국민에 대하여 인정)

□ 고충민원 정의

- 아산시(시 출자·출연 공기업, 출연기관 등 소속기관 포함)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

○ 방문접수, 팩스,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본관 1.5층)

- E-mail: kty0964@korea.kr

- 팩스: 041)540-2017 (팩스 신청 시 사무실 확인 전화 요망)

※신청서 서식은 아래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온라인접수

- 아산시청 홈페이지 > 민원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안내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문의전화: 041) 540-2243, 530-6232, 623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021. 6. 4. 기준

대상자	동의자	1차 접종	2차 접종
55,601	50,571	금일 1,962 / 누계 33,839 / 접종률 60.9%	금일 48 / 누계 8,903 / 접종률 16.0%

아산시
통합예약 | 문화관광 | 일자리 | 안전도시 | 민원생활
로그인 | 회원가입
주민서비스 ▾

아 산 시

[아산소개](#)
[정보공개](#)
[민원](#)
[시정](#)
[분야별정보](#)
[시민참여](#)

19°C
최저온도: 14°C / 최고온도: 24°C

민원

사랑,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The better A-si, the more happy

민원실안내 민원실이용안내	온라인민원 민원신청 민원결과 민원처리공고 행정처분공고 전자이력등록시스템 인터넷민원	종합민원안내 민원신청안내 수수료안내 문리장민원서류 외국어 민원서비스 여권민원안내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무안민원발급기(중) 어디서나 민원 차량등록 홈페이지 본인사증사실확인서 지폐제출내	민원편람서식 일반민원 지등치 보전 서식 등 주택 건설 토지 건축 환경 폐기물 처리 복지 교육 알리미 정책 기타 민원편람	국 공 유 재산 국 공유재산안내 국유재산 시유재산 영도출세상업임대법 군공민원신청 안내부 군공민원신청 안내부 연론정보 운영상황 공표	시민응답부조(고충민원) 시민응답부조 소개 고충민원신청 안내부 고충민원신청 안내부 연론정보 운영상황 공표
--	--	---	---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개](#)
[알림마당](#)
[정보마당](#)
[참여마당](#)

로그인 | 회원가입

청렴한 세상 아산시 시민과 함께 합니다.

참여마당

시민응답부조

- 시민 응부조란 소개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 고충민원 사례
- 연론정보 등
- 운영상황 공표

시민감사관 참여방

- 개요, 현황
- 제보 및 건의

익명신고
(감찰신고·제도개선 부조)

공무원부조리신고

채용배리신고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홈 > 참여마당 > 시민응답부조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1] 고충민원이란?

아산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된 공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적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체제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

[2] 고충민원 제외대상

- 아산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읍면사무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읍면사무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민원분류 및 조사여부 결정

○ 시민옴부즈만 직무 범위 및 권한

관할 범위	직무
·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사무 위탁기관	· 신청인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집단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 고충민원 제외 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조사 실시

- 고충민원의 조사는 당사자의 주장내용, 사실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
-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 신청서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및 실지조사 병행

□ 조사결과 통지

시정권고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의견을 표명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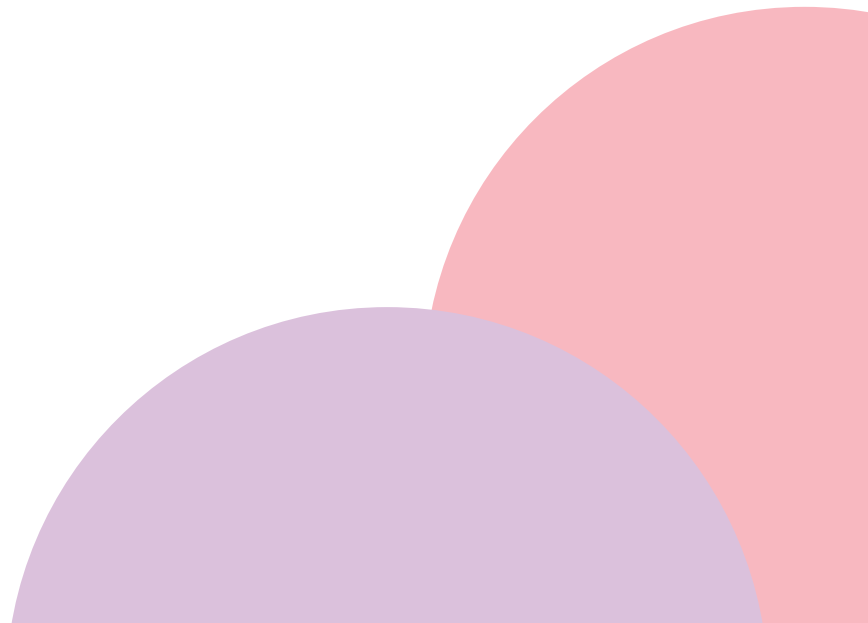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권고

기각 및 각하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밖의 고충민원이나 신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II 옴부즈만 초기활동

1. 시민옴부즈만 제도 초기홍보
 2. 시 홈페이지 정비
 3.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 

II. 읍부즈만 초기활동

1 시민읍부즈만 제도 초기홍보

□ 시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 게재

○ 미디어보드 활용 38개소, 시청 로비 DID 모니터 활용 홍보



The screenshot shows the Asan City official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to 'Asan City', 'Asan City', 'Citizen Eupjuzeon', 'Citizen Eupjuzeon', 'Citizen Eupjuzeon', 'Citizen Eupjuzeon', and 'Citizen Eupjuzeon'. Below the navigation bar is a search bar with the text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lue banner for the 'Asan City Citizen Eupjuzeon System Introduction'. The banner includes the following information:

- 시행일** 2021.1.1.
- 신청대상**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분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시민읍부즈만실
- 참고사항**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시민읍부즈만
- 문의** 감사위원회 041-540-2243

To the right of the banner, there is a '자주 찾는 정보' (Frequently Asked Questions) section with a date of 2020.12.29. The section includ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자주 찾는 정보	2020.12.29 현재
제지위기가구 대응요령	공직자청
채용시험공고	민원실이용안내
입부정보	시민생각
업무안내 및 연락처	가정방조회

Below the table, there is a '공직자청' (Public Notice) section with a date of 2020.12.29. The section includes a photo of a man in a suit and the text '공직자청, "여식사랑 오세원"입니다.'

(아산시청 홈페이지)



(시청 내 미디어보드)



(시청 로비 DID모니터)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게시

- 게시위치: 시 청사 민원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산하기관 민원실
- 제작수량: 10,000부
- 규 격: A4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실 오시는 길



주소
 아산시 시민로 456(아산시청) 1.5층
 감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실 (우)3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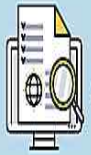
연락처
 Tel: 041-540-2243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이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의 보호제도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이 하는 일

- 아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고충민원 소개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

고충민원 제외대상

- 아산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해결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1.5층
감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실
- TEL: 041-540-2243

고충민원 신청대상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분

□ 홈페이지 첫 화면

아산소식

통합예약

문화관광

일자리

맛나드라

민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주요서비스 ▼



아산소개

정보공개

민원

시정

분야별정보

시민참여

32°C

미세먼지 좋음(27)

초미세먼지 좋음(12)

민원

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The better Asan, the more happy



민원실안내	온라인민원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국공유재산	시민음부즈만(고충민원)
민원실이용안내	민원신청	민원신청안내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국공유재산안내	시민음부즈만 소개
민원24	민원처리공개	수수료안내	주택, 건설, 토지, 건축	국유재산	고충민원 신청안내
행정처분공개	편리한민원서비스	외국어민원서비스	환경, 폐기물, 자원	시유재산	고충민원 사례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여권민원안내	여권민원안내	복지, 교육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언론홍보
인터넷지방세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일자리, 경제		운영상황 공개
	무인민원발급기이용	무인민원발급기이용	기타		
	어디서나민원	어디서나민원	민원편람		
	차량등록홈페이지	차량등록홈페이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방세안내	지방세안내			

아산시청	아산소식	일자리	문화관광
----------------------	----------------------	---------------------	----------------------

아산시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개
알림마당
정보마당
참여마당
로그인 회원가입

청렴한 세상 아산시 시민과 함께 합니다.

참여마당

시민 옴부즈만 소개

> 참여마당 > 시민옴부즈만 > 시민 옴부즈만 소개

시민옴부즈만

- 시민 옴부즈만 소개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 고충민원 사례
- 언론홍보 등
- 운영상황 공표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이상득

시민옴부즈만
신동택

시민감사관 참여방

- 개요, 현황
- 제보 및 건의

익명신고 (갑질신고·제도개선 부조리)

공무원부조리신고

□ 고충민원 신청 안내

참여마당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홈 > 참여마당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시민옴부즈만

- 시민 옴부즈만 소개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 고충민원 사례
- 언론홍보 등
- 운영상황 공표

☞ 고충민원이란?

아산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

☞ 고충민원 제외대상

- 아산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신청 방법

- 방문: 시청(본관) 1.5층 감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실
-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아산시청 1.5층) 감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실
- 팩스: 041-540-2017
- 온라인: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e-mail 신청: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이메일(kty0964@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41-540-2243, 041-530-6232, 6233

☞ 고충민원 신청서식 내려받기

시민감사관 참여방

- 개요, 현황
- 제보 및 건의

인명신고
(갑질신고·제도개선·부조리)

공무원부조리신고

채용비리신고

공익신고

인명 신고	공무원 부조리신고
공직자윤리법 관련자료	청렴교육 관련자료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제보 및 건의

□ 고충민원 신청(게시판)

+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민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e-mail 신청
민원분류	내용검토 및 단순민원 부서 이첩
조사여부 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기관)에게 조사개시 통보
조사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연장가능)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 관계기관에 통지

총 6 건 (1/1페이지)

번호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
6	박○구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7-26	1
5	한○기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7-24	1
4	박○학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7-06	5
3	조○균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4-19	5
2	김○은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2-19	9
1	강○민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1-02-18	13

□ 기 획 안

2021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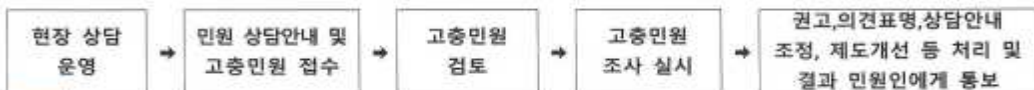
-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으로 시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상담·처리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함

I 추진방향

- 17개 읍·면·동 현장 순회 방문을 통한 고충민원 상담 창구 운영
- 시민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소극행정 개선 및 적극행정 전파
- 현장 순회 고충민원 상담을 매개로 옴부즈만 역할 대시민 적극 홍보

II 추진계획

- 기 간 : 3월 ~ 12월 (월 2회 격주 운영)
- 장 소 :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회의실 등
- 일 시 : 월 2회(격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상담대상 : 아산시민으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부담을 받으신 분
- 운영내용 : 읍면동별 1회 고충민원 현장상담 운영(일정 추후 알림)
- 아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상담 및 조사·처리
- 운영방법



III 행정사항

- 읍면동 협조사항 :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시 상담장소, 홍보 안내, 상담신청 등 협조
- 전 부서 협조사항 : 해당 부서 관련 고충민원 등을 읍면동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 공문발송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아 산 시 시 민 움 부 즈 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움부즈만 운영 알림

1. 시민움부즈만-8(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움부즈만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및장소: 온양4동(3.3.(수)), 영인면(3.17.(수)), 염치읍(3.31.(수)), 온양1동(4.14.(수)), 배방읍(4.28.(수)) 오후 2시~5시(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등)

나. 대 상: 아산시민으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불편부담을 받으신 분

다. 운 영 내 용: 시민움부즈만 2명, 담당자 1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청식으로 고충민원 접수하여 조사·처리

라. 협조사항 (관련 유선협의)

○ 고충민원 상담실(회의실 등) 협조

○ 주민홍보 안내 및 상담 예약 접수 협조

- led전광판 송출 홍보, 배너 홍보, 이통장협의회 등 사전홍보 안내

마. 문 의: 아산시 시민움부즈만실(☎041-540-2243)

- 붙임 1. 2021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움부즈만 운영 일정 1부.
2. led전광판 송출 안내 문구 1부. 끝.

아산시 시민움부즈만

수신자 아산시감사위원회위원장



시민움부즈만 2021.2.8.

신종백

시행 시민움부즈만-14

(2021. 2. 8.)

접수

주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 <http://www.asan.go.kr/>

전화번호 041-530-6233

팩스번호 041-540-2017

/ sdtjij@gmail.com

/ 대국민공개



아 산 시 시 민 움 부 즈 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움부즈만 운영 알림

1. 시민움부즈만-8(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움부즈만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일 정: 온양2동(5.12.수), 온양3동(5.26.수), 음봉면(6.9.수), 선장면(6.23.수),
오후 2시~5시(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나. 대 상: 아산시민으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불편부담을 받으신 분
 - 다. 운영내용: 시민움부즈만 2명, 담당자 1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고충민원 접수하여 조사·처리
 - 라. 협조사항 (관련 유선헌의)
 - 고충민원 상담실(회의실 등) 협조
 - 주민홍보 안내 및 상담 예약 접수 협조
 - led전광판 송출 홍보, 배너 홍보, 이통장협의회 등 사전홍보 안내
 - 마. 문 의: 아산시 시민움부즈만실(☎041-540-2243)

- 붙임 1. 2021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움부즈만 운영 일정 1부.
2. led전광판 송출 안내 문구 1부, 끝.

아산시 시민움부즈만



수신자 아산시감사위원회위원장

시민움부즈만 2021.4.12.

신용택

시행 시민움부즈만-26 [2021. 4. 12.] 접수

우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 <http://www.asan.go.kr/>

전화번호 041-530-6233 팩스번호 041-540-2017 / sdtjij@gmail.com

/ 대국민공개

□ 보도자료

1. 아산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민의 권익 보호·구제를 위해 오는 3월3일부터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정식으로 접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득,신동택 시민옴부즈만은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아직 생소한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한 발 다가가 귀 기울일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상담장을 찾아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2020년 5월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 후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 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여 1월 1일자로 시민옴부즈만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사진설명

1-1. 이상득(좌측), 신동택(우측)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 진
	감사위원회	김태연	540-2243	○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시민의 권익보호 위해 활발히 활동 중

아산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민 옴부즈만으로 이상득(전 아산시청 공무원)·신동택(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씨가 활동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시의 위법 및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아산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를 비롯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 및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등 업무를 임기 2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충민원 접수는 아산시청 본관 1.5층에 위치한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시정 활동에 대한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한 달여간 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받아 조정 1건, 상담 완료 3건을 처리하였으며 2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

고충민원 처리 사례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와 관련하여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접수됐지만 옴부즈만이 민원인과 관련부서의 입장을 들어 본바 고지 과정에서의 오해가 생긴 결과였으며 민원인이 요구하는 시정기간 연장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고충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며 활동중인 옴부즈만은 시민 권익 옹호 활동 경력과 행정경험 모두 풍부한 책임자”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관 갈등의 조정·중재자로서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의 권익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득, 신동택 옴부즈만은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직 옴부즈만 제도를 모르는 시민분들이 많아 홍보활동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제도이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 해결 하러 읍면동 찾아간다

최진규 기자 | 승인 2021.02.16 16:28



아산시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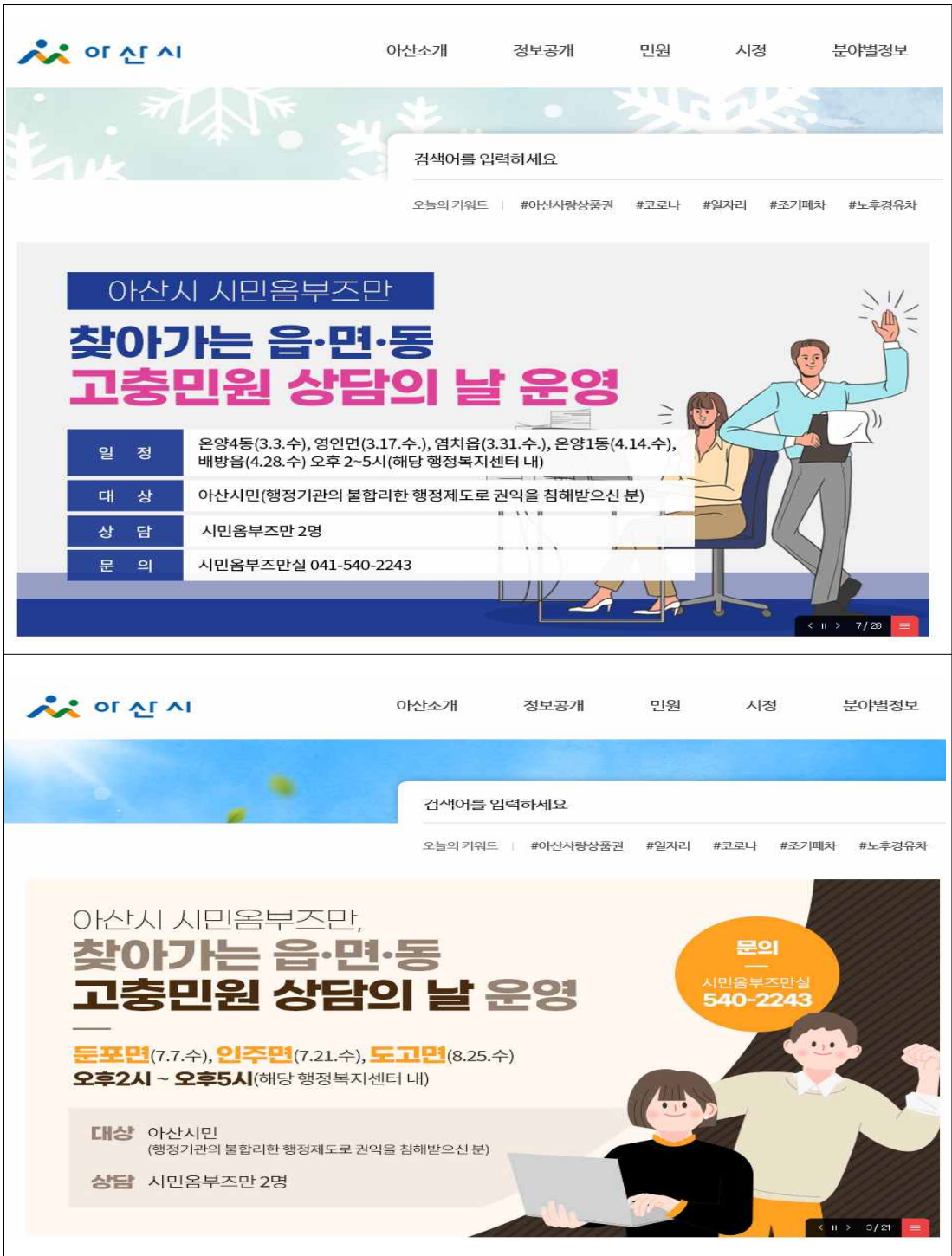
(아산=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민의 권익 보호 구제를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시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시민의 고충을 듣고 풀여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고충민원 현장 상담은 ▲3월 3일 온양4동 ▲3월 17일 영인면 ▲3월 31일 염치읍 ▲4월 14일 온양1동 ▲4월 28일 배방읍에서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각종 매체 활용 홍보

-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아산뉴스), (SNS 인스타그램), 활용



02 시정 소식

이천뉴스 제328호 · 2021년 3월 15일




아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2월 26일, 아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1차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정신요양 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 일하거나 입원·입소 해있는 65세 미만 성인 1,927명(종사자 1,188명, 입원·입소자 739명)입니다. 아산시는 2월 19일까지 관내 1차 우선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종 희망자 집수를 했는데요, 전체 대상자의 94.9%인 1,828명이 접종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체 의료 인력이 있는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은 자체 의료 인력이 접종을 진행하고요, 의료 인력이 없는 요양 시설 등 28개소에는 방문 접종단이 방문 접종을 진행합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의사·간호사·행정인력 등으로 꾸려진 방문 접종단 10팀을 꾸렸는데요, 접종에 자질이 없도록 모의훈련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응급 후송병원 및 아산시 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곧 일반 시민 대상 접종도 시작됩니다. 일부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아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보건기구와 식약처가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백신"이라며 "아산시는 접종 직후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달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 이 형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항할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꼭 지켜주셔야 한다는 기 기억해 주세요.

충남 최초 도입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시민 권익보호 활동 기대

아산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충남 최초로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이 1월 1일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 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2년 임기 동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 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처 강구 권고 등입니다. 아산시는 아직 옴부즈만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은 만큼 옴부즈만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그중 하나가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인데요, ▲3월 3일 문항 4동 ▲3월 17일 향인면 ▲3월 31일 영치읍 ▲4월 14일 운양 1동 ▲4월 28일 비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아산 시청 본관 15층에 위치한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고충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 갈등의 조정, 중재자로서 시민옴부즈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시민 권익이 크게 향상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콜센터 팩트번호 1422-42

이천뉴스 제328호



#알림톡톡 ⑥

7/8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일정 : 온양2동(5.12.수), 온양3동(5.26.수),
음봉면(6.9.수), 선장면(6.23.수)
오후2시~오후5시(해당 행정복지센터 내)

대상 : 아산시민(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으신 분)

상담 : 시민옴부즈만 2명

문의 : 시민옴부즈만실
041-540-2243



아산시



2_mine님 외 33명이 좋아합니다

asanstory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가족 행사가 많은데요... 더 보기

10 생활정보

아산뉴스 제329호 2021년 5월 15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시행기간 2020. 8. 5.(수) ~ 2022. 8. 4.(목)

적용지역 및 대상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대대준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문의사항 토지(토지관리과) 530-6470-1
건물(건축과) 540-2945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기간 2021. 2. 22.(월) ~ 여산 조전 시

내용 출고·등록 손으로 수소전기차 30대 지원

금액 3,450만원 정액 지원

방법 수소차 판매 대리점 방문 접수

문의 기후변화대책과 530-6255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일정 온양4동(3.3.수), 압인면(3.17.수), 영지읍(3.31.수),
온양1동(4.14.수), 배방읍(4.28.수)
오후 2~5시(해당 행정복지센터 내)

대상 아산시민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으신 분)

상담 시민옴부즈만 2명

문의 시민옴부즈만실 540-2243

시민 옴부즈만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 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감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산시청 로비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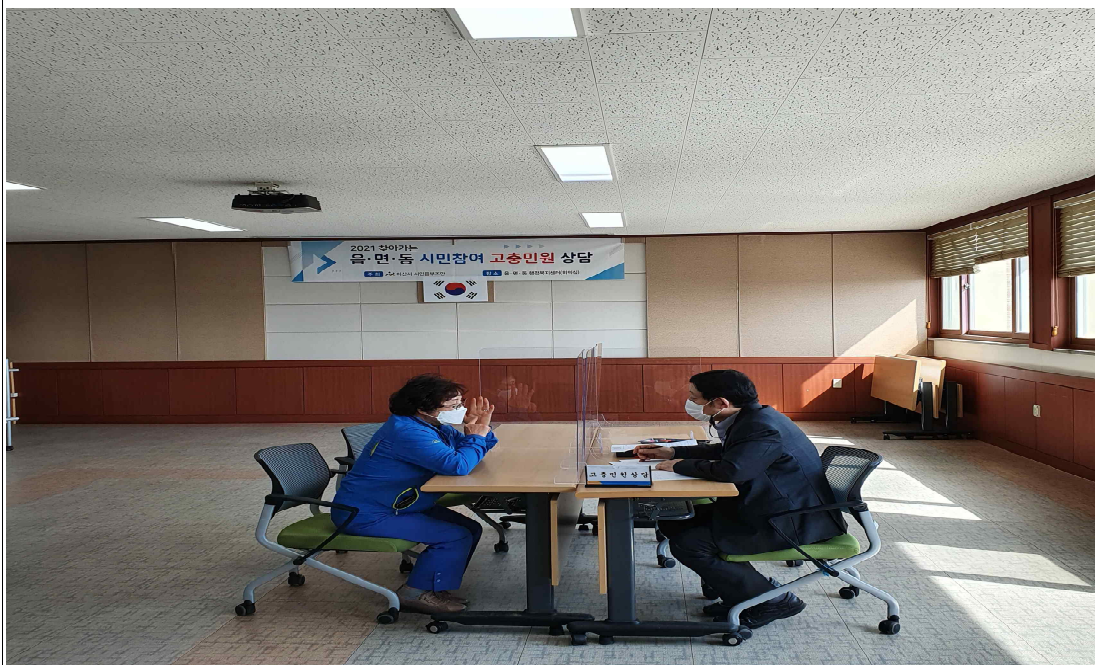


(은양1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주민 상담



3.3.(수) 온양4동 현장 주민 상담



3.31.(수) 염치읍 현장 주민 상담



6.9.(수) 음봉면 현장 주민 상담



6.23.(수) 선장면 현장 주민 상담

□ 2021년 읍면동 순회 고충민원 상담 일정

※ (격주 수요일 오후 2시~)

월 별	일 정	읍·면·동	비 고
3월	3일(수)	온양 4동(회의실)	
	17일(수)	영인면(회의실)	
	31일(수)	염치읍(회의실)	
4월	14일(수)	온양 1동(회의실)	
	28일(수)	배방읍(회의실)	
5월	12일(수)	온양 2동(회의실)	
	26일(수)	온양 3동(회의실)	
6월	9일(수)	음봉면(회의실)	
	23일(수)	선장면(회의실)	
7월	7일(수)	둔포면(회의실)	
	21일(수)	인주면(회의실)	
8월	25일(수)	도고면(회의실)	
9월	8일(수)	온양 5동(회의실)	
	29일(수)	온양 6동(회의실)	
10월	13일(수)	탕정면(회의실)	
	27일(수)	신창면(회의실)	
11월	10일(수)	송악면(회의실)	

□ 읍부즈만 선진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2021. 4. 1.)



평택시 시민읍부즈만 방문



시흥시 시민호민관 방문

□ 고충민원 담당 공무원 의견청취 및 협의 (2021. 3. 2.)



(건축 허가 시 부서 간 협력방안 마련 간담회)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1. 고충민원 접수 · 처리 현황
2. 시정권고 사례
3. 의견표명 사례
4. 합의조정 사례
5. 상담안내 사례
6. 기각(각하) 사례

Ⅲ. ombudsman만 고충민원 처리

1 고충민원 접수 · 처리 현황(2021년 1월~7월)

□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합계	처리 완료							조사 중	비공 식해 결
	소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조정	상담·안내				
					설명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53	53	1	6	3	38	1	3	1	5

□ 민원 유형별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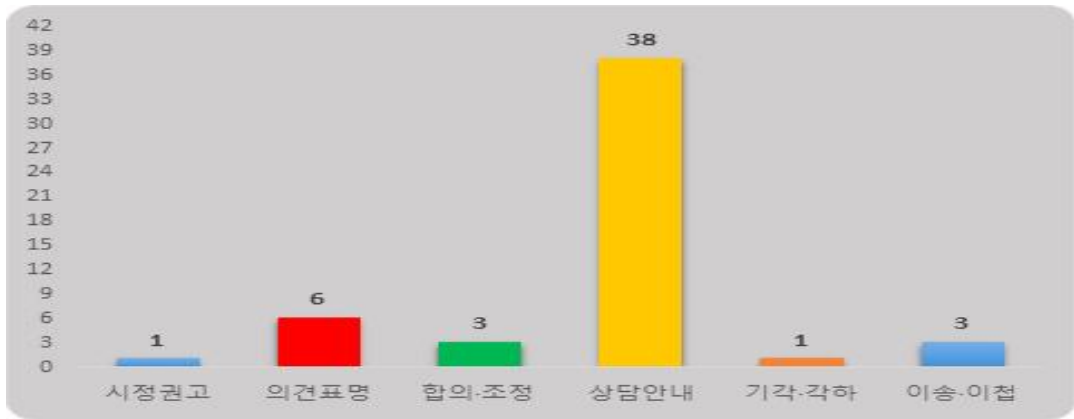
합계	행정 일반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재정 세무	주택 건축	교통 도로	공원 녹지	환경 위생	상하 수도	산업 농림	기타
53	2	2	1	3	20	14	1	4	2	3	1

□ 민원 접수 경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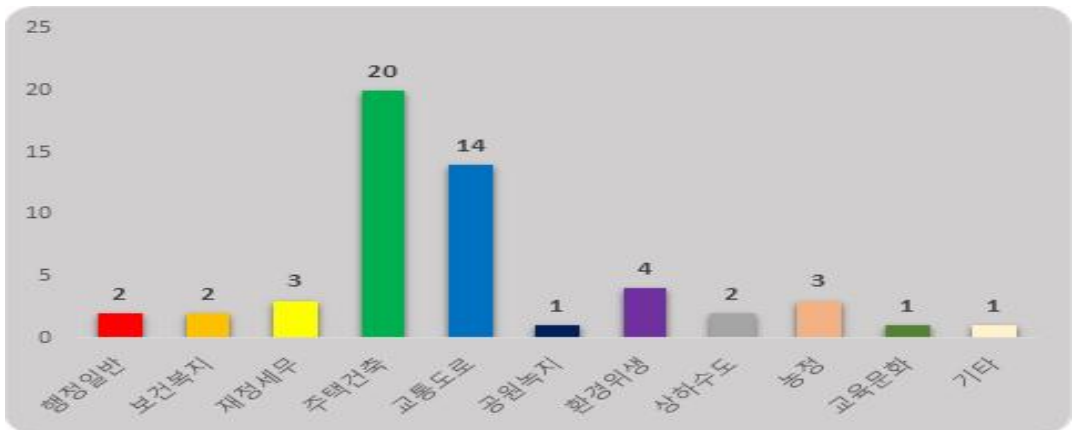
(단위: 건)

합계	방문	읍·면·동 현장 상담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53	20	24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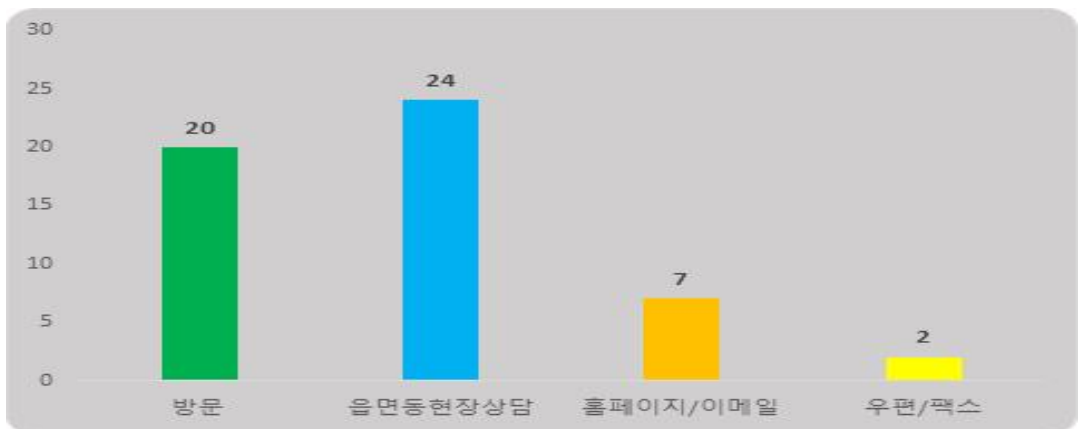
<민원처리 현황>



<민원 유형별 현황>



<민원 접수 경로별 현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이의 - 시정권고

□ 민원 요지

-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 정보공개 요청

□ 신청 취지

-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비공개하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됨
비공개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고 건축 허가 비용 등과 허가 연장 및 반려 사유 기타 관련 참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피신청인의 의견

- 신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전제를 했고, 정보공개는 직접 대상자 여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본인이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하였음,

□ 사실관계

- 아산시 ○○○○관에 정보공개 청구(2020. 1. 27.)

신청인은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 관련(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 ○

○○○나○○○○○)의 원고 ○○○○○○○(주)의 사내이사로서 토지 매수계약금 지급, 토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비용 지급 등으로 1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대상 토지를 임의경매로 매각 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다수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며 ○○면 ○○리 △△△-△번지 외 3필지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아산시 ○○○○관-7140, 2021. 2. 2.) → 아산시 ○○○○관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라 판단하여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 시민옴부즈만실로 고충민원 접수(2021. 2. 8.)
아산시 ○○○○관에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 담당부서(○○○○관) 협의(2021. 2. 8.)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 ○○○○관을 방문하여 ○○○○, ○○○○팀장과 민원인의 고충 및 고충 해소 방안을 협의함
- 신청인은 □□□□□□(주)의 사내이사로서 아산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 등 토지매수계약금 지급, 토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비용 지급 등으로 1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등에 관련된 비용과 허가 연장 및 반려에 관한 참고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

□ 판단

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중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판단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의 원칙과 국가기밀보호의 원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신청인은 본인과 관련된 회사에서 업무수행과 관련된 아산시의 행정행위에 관련된 사실행위만을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해 달라는 것으로서,
- 아산시에서 정보공개를 비공개한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제시하였으나,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사법 영역에서 공개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비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정보공개처분 취소)에 의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 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판결도 있는바,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정보공개 건과 관련성이 있는 신청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이라 판단되고 이를 공개 할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공개 된 문건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한다고 보이는바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법 제정 이유와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정권고” 함

주택·도로점용 허가 시 일부 행정착오 개선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시의 행정착오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향후 대책 마련 요구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2017년 4월 단독주택 건축허가(○○동 ●●-●) 및 해당 진·출입로 도로점용(○○동 ■■-■) 허가를 받음. 그러나 2018년 7월 ○○○○○○으로부터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부과 고지를 받고 해당 도로(○○동 ■■-■)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인 것을 인지하게 됨.
처음 아산시로부터 건축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당시는 6만여 원의 도로점용료를 냈는데, ○○○○○○으로부터 국유지 무단 도로점용료 변상금 통지를 받은 후 매년 오십여만 원씩 불법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해와 피해 관련 고충을 호소.

□ 피신청인의 의견

- (○○○○관) 건축허가신청 당시, ○○동 ■■-■번지는 시도2호선에 저촉된 토지이며,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로 지목은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협의 신청됨.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신청된 인·허가 및 관련법규 협의 요청(○○○○관-19057(2017.3.27.) 함. ‘건축허가(신축)신청서(최**)] 협의 완료 후 건축허가 처리함.
- (○○과) ○○○○○○에서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신청인이 접수하여 2017. 4. 27.에 납부한 금 66,770원을 환급 조치함. 국유지인 ○○○○○○ 부지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한 사항으로 이후 ○○○○○○ 부지를 제외할 면적에 대한 점용 변경 처리하였음.

- (○○과) 본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중 「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1조2항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시 ○○과에 위임된 재산이 아니므로 “의견없음” 회신된 사항이며 해당 국유지 관리기관(○○○○○○○)과 ‘협의 의견’ 이 누락 된 사유는 ‘우리부서’ 해당 사항 없음.

□ 사실관계

- 2017년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동●●-●(건축허가), ■■■-■(도로점용) 번지에 아산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신청인은 2018년 ○○○○○○에서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부과 고지 확인 후 해당 점용도로(■■■-■번지)가 국유지임을 알게 되어 시 행정이 잘못된 것을 인지 고충민원을 제기함
-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된(2021. 1. 14.) 후 당시 건축 허가를 승인해 준 ○○○○○관을 방문하여 민원 신청인의 고충민원 발생 원인으로 행정착오 문제, 국유지 관리기관과 협의 미비점 등에 대하여 1차 확인 검토 논의 이후 고충민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서(○○○○관, ○○과 등)에 각각 해당 민원 관련 자료 및 부서 검토의견을 요구(1차 ' 21. 1. 19. 2차 ' 21. 1. 28.)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함.
- 그리고 신청인의 주택 및 도로점용 현장(○○동 ■■■-■)을 방문하여 현장 사실 확인, 신청인의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함(2021. 2. 23.)
- 해당 고충민원 관련 부서(○○○○관, ○○과, ○○과 참석)와 향후 민원 개선대책 마련 협의 회의를 진행함(2021. 2. 26.)

□ 판단

가.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제28조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6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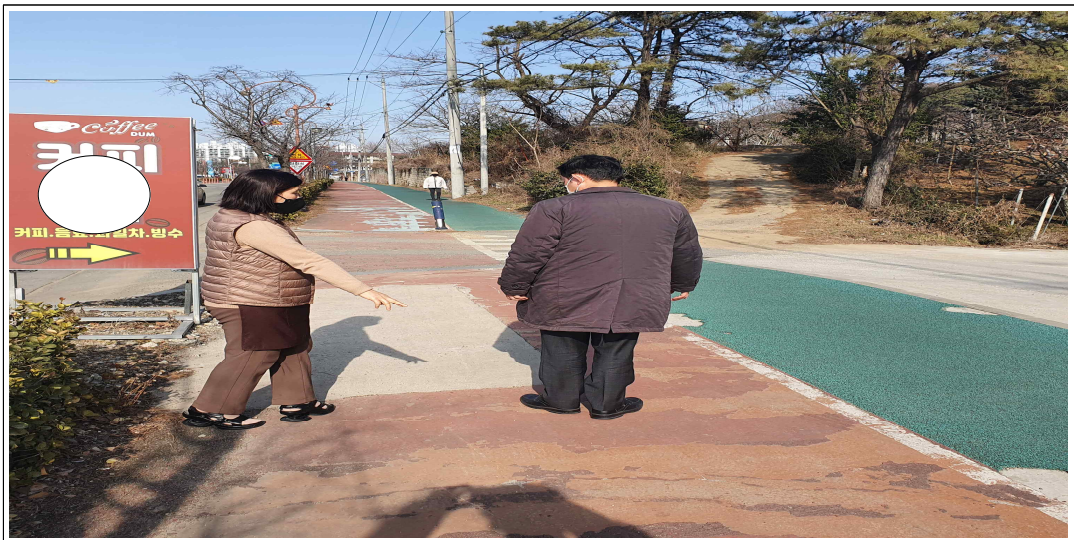
나. 판단내용

○ 본 민원은 아산시의 행정 부주의 등 행정 착오로 국유지(○○동 ■■-■) 관리 기관(○○○○○○○○)과 협의가 누락된 상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행정착오로 고충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건축 허가 시 의제처리 협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 미비 등 관계 부서의 소극행정도 일부 행정착오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의 행정착오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하여, 아산시의 행정착오가 국유지 이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금전적인 피해보상 요구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론

○ 피신청인은 향후 행정 착오(도로점용 허가 시 해당 국유지 관련 기관 - ○○○○○○○○- 협의 누락 등)로 인한 고충민원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담당자 부주의 등에 대하여 조치하고, 도로점용 허가 시 국유지 기관 협의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유지 도로점용 허가 관련 의제 협의 시 적극 의견 개진 방안 마련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견 표명”을 한다.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방문>

개인 사유지 불법 점용 및 훼손 이의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면 ○○리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불법 점용 및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 요구

□ 신청 취지

- ○○면 ○○리 ◇◇◇-◇◇번지 소유자인데 좌측 ●●●-●●번지를 개발하며 완만했던 경사지를 7m가량의 급경사지로 만들어 여름철에 토사가 흘러내려 인사사고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망
- ○○면 ○○리 □□□-□□, □□□-□□번지의 도로 소유자인데 도로의 앞 ▲▲▲-▲▲번지 토지 소유자가 동의 없이 건축물을 짓고 있음. 시 담당자에게도 민원 제기를 하였지만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면 ○○리 ◇◇◇-◇◇번지를 개발함에 있어 절토 및 성토는 형질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필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됨.
- (○○○○관) ○○면 ○○리 ●●●-●●번지에 대해 2020. 4. 1. 건축 신고서가 제출되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처리 된 사항이며 상기 건축신고서 첨부문서 중 □□□-□□, □□□-□□번지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이 동의한 서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사실관계

〈절개지 붕괴위험 관련 민원〉

- ○○면 ○○리 □□□-□□번지를 개발하며 완만했던 경사지를 급경사로 만들어 여름철 장맛비에 토사가 흘러내려 인사사고 및 재산피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2021. 4. 22.)
- 해당 민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여부 및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송부하도 통보(시민옴부즈만 ⇒ ○○○○과) 2021. 4. 23.
-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찾아본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후 원상회복 명령 예정이라고 통보받음 (○○○○과→시민옴부즈만) 2021. 4. 26.
- 옴부즈만이 조사한 결과 절토 및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필지 중 일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피해방지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착공계 시 미동의 건축 진행 민원〉

- ○○○○관 행정조치 내역
 - 2020. 8. 5. :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처리
 - 2020. 9. 2. : 착공신고 처리
 - 2020.11.18. : 신고사항 변경(1차처리)
 - 2020.12.14. : 건축관계자 변경 처리
 - 2021. 1.26. : 건축관계자 변경 처리

- 2021. 4. 22. 시민옴부즈만에게 건축착공시 미동의 건축진행으로 고충 민원제기
- 2021. 4. 23. 고충민원 관련 자료 요구(허가담당관)
- 2021. 4. 28. 고충민원 관련 1차 자료 제출(○○○○관 → 시민옴부즈만)
- 2021. 5. 7. 고충민원 관련 2차 자료 제출(○○○○관 → 시민옴부즈만)

□ 판단

가.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0조 제3항
- 「건축법」 제14조 등

나. 판단

- 2020. 4. 1. 아산시 ○○면 ○○리 ●●●-●●●번지에 대해 건축신고서 제출시에 신청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으며, 관련 규정 검토 후 2020. 8. 5. 건축신고 처리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착공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 첨부된 도로 및 배수(우 오수, 상 하수)로 연결 사용 동의서에 3인의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으면서 ○○면 ○○리 ○○○-○○번지는 신청인의 소유토지인데 손△△가 동의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신청인은 잘못된 서류라고 주장을 하나,
신청인은 2018년 4월에 손△△에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목적으로 신청인이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한 바 있으며,

2020년에 제출한 사용승낙서 표기란에도 ○○○-○○번지가 명시되어 있고, 표시된 지번이 한 페이지에 있으며 신청인(소유권자)이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다만, 건축으로 인하여 소음, 먼지, 자재적치 등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됨

□ 결론

- 피신청인은 절토 및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아산시 ○○면 ○○리 ◇◇◇-◇◇번지 행위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리 □□□-□□번지 건축 진행 시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의견표명” 함

진·출입로 개설 및 배수로 설치 요청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면 ○○리 ■■-■번지 토지에 대해 진·출입로 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해 줄 것 을 요청

□ 신청 취지

- 국지도에 바로 인접한 ○○면 ○○리 ■■-■번지에 조그만 농지(밭)만 남아 있는데 도로공사 시 진출입로를 포장해 준다고 공무원 및 공사업체가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포장을 해주지 않고 있어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잡초가 많이 자라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미포장된 진·출입로 바로 옆에 아산시에서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놔는데 인접한 농지보다 높이 설치를 하고, 밭쪽으로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 비만 오면 농지(밭)로 빗물이 흘러서 농사를 짓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함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현장을 확인해 보니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국지도□□호선은 (주)○○○○○○○○ 등 산단 진·출입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로서 2020. 1. 20. 충청남도 ○○○○사업소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노선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충청남도 ○○○○사업소 협의 및 예산편성) 기간이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사실관계

- 2021. 5. 13. 신청인은 시민옴부즈만을 찾아 그동안의 국지도 □□호선 공사와 (주)○○○○○○○○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호소함. 시민옴부즈만은

해당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으로부터 현장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함

- 2021. 5. 17. 시민옴부즈만은 ○○○○과(○○○○팀)와 민원 해소방안 협의
△△△△과 △△△팀 팀장으로부터 주민숙원 사업비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함

□ 판단

가.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나. 판단

- 신청인은 산단 진입을 위한 국지도 □□호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택과 농지 사이로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많은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고 도로와 접한 일부 농경지(밭)만 남아 있는 상태임
- 국지도 □□호선 도로와 인접한 농지(주로 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진·출입로가 거의 다 시멘트 포장에 완료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의 농지(밭)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흙판을 묻고 도로경계석을 낮추어 진·출입은 할 수 있으나 진·출입로 포장이 되지 않고, 승강장 보다 지대가 낮아 우기에 물빠짐이 안되고 빗물이 밭으로 흘러들어 질퍽거리고 잡초가 쉽게 자라서 신청인의 고충이 클 것으로 보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지도 □□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주택과 농지사이의 많은 사유지가 편입되어 할 수 없이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까지 한 상태에서, 일부 남은 농지(밭)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포장해 주겠다고 공무원(공사관계자)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출입로 포장을 해주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국지도 □□호선 공사가 2020. 1. 20. 완공되어 준공검사까지 난 상태에서 충청남도 ○○○○사업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고충민원 해결을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민원인의 고충과 불만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사업 주체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아산시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아산시에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산시에서는 탄력적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과 △△△팀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과에서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결론

- 공공사업에 적극 협조 해온 신청인과 기 약속[「행정기본법」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된 진·출입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가 시행되지 않아 제기한 고충민원은 시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 투입 등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의견표명” 함.

도시계획도로 해지 건축물 진출입로 확보 요청 - 의견표명

□ 민원 요지

- 도시계획도로로 계획 해제로 인해 건축물이 맹지가 되어 억울하오니 건축물의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신청 취지

- 1997년경 ○○면 ○○리 □□□~● 대지에 문제의 □□□~㉠㉠번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진입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건물이 준공되었고, 신청인이 2003년 4월 위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읍내리 □□□-㉠㉠번지가 도시계획 입안지구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고시 되었음.
- 그 뒤에 문제의 □□□-㉠㉠번지의 도로개설이 늦어지면서 문제의 땅 주인이 2006년경 “도로 개설시 언제든지 보상없이 철거하겠다.”는 조건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진입로가 막히고 건물 뒤에 있는 주차장까지 사용할 수 없는 맹지가 되어 한동안 가게 문을 닫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만을 원하며 기다려 왔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안)이 해제 되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함.
- 더구나 도시계획도로였던 □□□-㉠㉠번지 소유주가 이제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도시계획선을 근거로 건축허가 되고 준공된 건축물이 맹지가 되어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까지 어렵게 되었음.
도시계획선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고 맹지가 된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 추진 경위

- 1997년 ○○면 ○○리 □□□-●번지 상가건물 신축(당초 국토이용 관리법에 따른 준도시지역(취락지구) - 비도시지역
- 2003. 2. 27. 도시지역 편입 및 도시계획시설(대로3-24, 소로 2-227)결정
- 2018. 3. 15. 소로2-337 폐지(아산시고시 제2018-108호)
- 2018. 5. 21. 대로3-24변경(충청남도고시 제2018-141호)

▶ 검토의견

- 당초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24, 소로2-337)가 2023년까지 집행 계획이 없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대비하기 위해 폐지·변경되어 신청인 필지(□□□-●번지)가 맹지가 됨
- 앞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는 경우(도로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예정

○ (○○과)

- ○○면 ○○리 □□□-㉠㉠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결과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추진 검토 계획임

○ (○○○○○관)

▶ 추진경위

- 1997년경 도시계획도로 계획선(○○면 ○○리 □□□-㉠㉠)을 통해 건축허가
- 2018. 03월경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해제되어 ○○면 ○○리 □□□-●번지가 맹지가 됨
- ○○면 ○○리 □□□-㉠㉠번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축조하였으며 도시계획선이 해지된 이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추가연장이 불가하여 2021. 3. 1.까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6차 까지 연장되었으나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자금 사정으로 현재까지 철거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검토의견

- 현행법상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기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음
-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면 ○○리□□□-●번지와 □□□-㉠㉠번지 사이 도로는 오랜기간 동안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현행도로 부분에 지장물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시 통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므로 개인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건물 진출입을 위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지양하도록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실관계

- 1997년 ○○면 ○○리 □□□-㉠㉠번지의 도로계획선을 통해 ○○면 ○○리 □□□-●번지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신축(당초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도시지역(취락지구) 하였고,
- 2003년 2월 : 도시지역 편입, 당초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중 취락 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대로 3-24, 소로2-337)된 이후,
- 2003년 4월경 신청인 배○○은 □□□-●번지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1층 160명 정도의 호프, 레스토랑을 2층 건물에도 약 160여 평의 당구장을 운영하였음.
- 도로개설 계획이 늦어지자 2005. 7. 12.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되었던 □□□-㉠㉠번지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건축법」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2항)를 받아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진입로가 막히는 맹지가 되어 뒤편 주차장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 신청인은 아산시청에 빠른 도로개설을 위해 여러번 호소도 하고 사정도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 도로개설이 되지 못함.
- 그 후에 2018.3.15. 소로2-337 폐지(아산시고시 제2018-108호에 의거 설치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되었고,
- 2018.5.21. 대로3-24 충청남도고시 제2018-141호 변경〔582-3번지 앞 대

로 3-24 저축부지(582번지) 부분해제〕되어 신청인의 필지(○○리 □□ □-●번지)가 맏지가 됨.

□ 판단

가. 관련법령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나. 판단내용

- 살피건대 1997년도 도로계획선을 통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상가를 건축하였고 2003년 2월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20여년동안 도로가 개설되기만을 기다렸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막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행정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신청인은 도로계획선(○○면 ○○리 □□□-㉠㉠)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면 ○○리 □□□-●)을 2003년에 매입하였고, 비도시지역에서 2003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빠른 시일안에 도로가 개설되기만을 소망하여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 2023년까지 장기간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201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의 상가건물은 맏지가 되었다.
- 하물며 2021.3.21.까지 철거조건으로 연장되어 오던 가설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정식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보다 더한 맏지가 될까 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아산시(○○○○관)에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이 폐지된 토지에 건축신청이 들어온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고 기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다.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또는 변경)에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 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 특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통로(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로로 지정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앞으로 도로계획시설(도로)이 폐지 및 변경된 ○○면 ○○리 □□□-㉠㉠번지에 건축허가가 들어 온다면 이 도로와 □□□-●번지 건물의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음이 상당하다.

□ 결론

- ○○면 ○○리 □□□-㉠㉠번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 지정 등을 통하여 기존 건물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조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행강제금 일부 부당 부과 이의 - 합의 · 조정

□ 민원 요지

- ○○동 ●●-●●번지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및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 반환 요구

□ 신청 취지

- 1999. 6. 19. 위반건축물 추인을 위한 아산시 ○○동 ●●-●●번지 건축(대수선) 신고와 관련하여 아산시는 지붕 부분이 도로쪽 건축선을 침범했다고 반려했으나, 건축물이 건축선을 침범한 이유는 1969년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아산시에서 부당하게 지적선을 변조하였기 때문이고 변조된 지적선을 사실과 같게 복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 또한 이행강제금의 1~3회분(2000~2002년)도 상속문제 때문에 본인 모르게 가족인 꺾△△이 납부를 했고, 그 후 ○○과에서 관리하는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3회 부과로 종결”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후에 3년 동안 부과하지도 않아 종결처리된 것으로 믿었는데 2006년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미수납됨에 토지가 압류된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음.
- 또한, □□-□□, □번지 쪽에서 1969년 구획정리 이전부터 240 도로를 현재까지 무단 점유상황을 알고 있기에 아산시의 행정이 불법 행정이라 일관성있게 주장함.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도 돌려주기 바람.

□ 피신청인의 의견

- 신청인은 위반건축물(주민신고)에 대한 적발과 고발(1999.10.13.)후에 추인을 위하여 2000.6.19. 건축(대수선)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선 침범을 이유로 반려된바 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청인은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충청남도과 아산시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1999년 당시 불법대수선 행위자로 신청인이 고발 조치 된 건으로 ○○○○과의 경계복원 측량과는 별개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해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 및 「아산시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처리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임.
- 다만, 민원인이 이행강제금을 3회(2000~2002년) 납부 후 3년간(2003~2005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아 종결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행정조치가 유연하게 연결되지 못한 부분은 있으며, 2006년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미납부됨에 따라 토지가 압류된 것을 최근에 인지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등기 우편 수신여부 및 공시송달 등에 대한 확인은 현재 어려운 상태임.
또한, 2006년과 2008년에 이행강제금이 미수납되어 부동산을 압류 및 결손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이행강제금의 부과목적은 불법 부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상기 민원의 경우 2000년~2002년에 걸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1~3회분은 납부 하였으며, 2016년 위반건축물이 철거 후 개축되어 불법 부분은 조치 완료된 상태임. 불법 부분이 해소된 상태에서 과거 일부 체납(4회)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볼 사항임.

□ 사실관계

○ 아산시(○○과) 행정조치 내역

- 1999. 8. 16. 위반건축물 적발(주민신고-불법대수선)
△ 2차례 시정명령(건축주 이△△, 임차인 곽○○)
△ 미시정에 따른 행위자(곽○○) 고발조치(1999. 10. 13)
- 2000. 6. 19. 건축(대수선 신고서 제출)
- 2000. 6. 21. 건축(대수선) 신고서 반려(건축선 침범)
- 2000. 11. 9. 이행강제금 부과(1회 금 626,900원 - 수납)
- 2001. 11. 15. 이행강제금 부과(2회 금 615,140원 - 수납)
- 2002. 11. 16. 이행강제금 부과(3회 금644,000원 - 수납)
△ 내부분서인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3회부과로 종결)로 기재
- 2006. 8. 17. 이행강제금 부과(4회 금 982,410원 : 미납)-(결손)
- 2007. 6. 4. 이행강제금 부과(5회 금 980,730원 -미납)
△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압류(2007. 11. 21)
- 2008. 5. 28. 이행강제금 부과(6회 889,380원 - 미납 - (결손)
- 2011. 4. 18. 이행강제금 부과(7회 금822,000원 - 미납)
△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압류(2012.2.16.)
- 2012. 10. 15. 이행강제금 부과(8회 금740,500원 - 미납)
△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압류(2013. 2. 6)
- 2013. 12. 19. 이행강제금 부과(9회 : 금673,800원 - 미납)
△ 천안 ○○동 ◎◎◎-◎◎번지 토지압류
- 2016. 3. 31.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개축(사용승인)

□ 판단

가.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행정기본법」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나. 판단 내용

- 아산시에서는 1999. 8. 16. 불법건축물로 주민신고 된 건에 대하여 2차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을 하였고, 고충민원 신청인 꺾○○은 벌금을 납부한 후에 2000. 6.19 추인을 위하여 건축물 대수선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건축선 침범(도로경계선 약 40cm)을 이유로 대수선 신고서를 2000. 6. 21. 신청인에게 반려한 바 있으나 당시 위반건축물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로경계선을 침범했다고는 하나 공중에 대한 피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번지 전체가 69년 구획정리가 된 후 북쪽으로 약 1.8m 밀려 70년~80년대까지 건축이 된 지역이고 1969년 당시 구획정리 전의 건축물 (◆◆-◆번지)이 북쪽으로 ●●-●번지가 침범됐고, ○○-○, ◆번지는 97년경까지 국유지(한국전력)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240 도로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은 남쪽(철도쪽) 240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변동은 없으나 지적 변조의 근거가 되었다고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1969년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완성된 지적선과 근래 항공촬영에 의한 것과 비교해보면 일정부분 전체의 건축물이 약간씩 밀려서 건축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분(2021. 2. 15일 전 신창면장 김▲▲ 면담)도 있다.
- 또한, 신청인 꺾○○은 위반건축물(○○동 ●●-●●)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회 626,000원, 2회 615,000원, 3회 644,000원의 이행강제금은 이미 납부(납부된 이행강제금은 꺾○○ 본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압류된 상속재산의 매도 과정에서 신청인과 같은 상속인 오빠 꺾■■이 신청인 모르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3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 ○○과를 방문 했을 시 이행강제금 3회 부과로 종결할 수 있는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님에도 건축법 시행령 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의한 위반건축물관리대장에 “3회 부과로 종결”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신청인이 확인한 상태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신청인이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 종결처리가 된 것이라 믿도록 하였다.

- 2006. 8. 17.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4회 금984,410원)과 2008. 5. 28. 부과된 이행강제금(6회 금889,380원)은 결손처리하고 2007. 6. 4. 부과된 이행강제금(5회 금 980,730원만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를 2009. 1. 28. 압류한 것에 대하여는 당연히 2006년과 2008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압류했거나 아니라면 함께 결손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일부만 압류하고 일부만 결손처리를 한 것은 행정처리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자진해서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바 이 위반건축물은 2016. 3. 31. 기존 건축물 철거후 개축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목적이 이미 달성된 상태이다.
- 특히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아산시와 충청남도에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되었으니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아산시장, 국장 등을 수시로 찾아 항의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에 관련됐던 수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과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할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행정 내부 문서에 “3회 부과로 종결” 이란 기재한 문서를 민원인이 보도록 하고 3년 동안 부과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믿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도 있고,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고충 민원으로 행정낭비와 향후 지속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납부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고충을 다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 결론

-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피신청인의 어려움과 행정낭비,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납된 이행강제금 부과와 압류처분을 취소하도록 **합의조정**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이의 - 합의 · 조정

□ 민원 요지

-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추가 지연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함으로 과태료 경감 처리 요청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며 산단 내 공동주택용지 4블록을 ■■건설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7. 4.블록 중 1블록을 최초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에 나머지 3블록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를 맡고 있던 주무관에게 “지적 정리전 사업장 내 공동주택용지가 모두 동일 물건이므로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구두 안내를 받음.
하지만 2021. 3. 경 최초 신고한 1블록과 이후에 신고한 1블록은 동일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함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신청인 (주)○○○○산단은 (주)○○건설과 2017. 4. 14. 매매계약을 맺은 4블록에 대해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데 1블록은 2020. 7. 9.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3블록은 2020. 12. 11. 거래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 일자가 다르므로 거래 위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 사실관계

<아산시 ○○○○과 행정조치 내역>

가. 아산시 ◇◇면 ◇◇리 가 D1-1 (1블록)

○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

- 2020. 7. 9. : 계약신고 (주)○○○산단→ (주)○○건설 3년 26일 지연
- 2020. 7. 9. : 계약해제신고 (주)○○○○산단→ (주)○○건설
- 2020. 7. 9. : 계약신고 (주)○○○○산단 → (주)***** 3년 26일 지연

○ 과태료 부과경위

- 2020. 10. 19.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검토보고(7~8월분)
- 2020. 10. 20.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사전통지
- 2020. 11. 18.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020. 11. 18.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서 접수 검토보고

○ 과태료 부과현황

- (주)○○○○ 산 단: 360만 원(240만 원, 120만 원)
- (주)○○건설: 120만 원
- (주)*****: 120만 원

나. 아산시 ◇◇면 ◇◇리 가 D1-2, D2-1, D3-2

○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

- 2020. 12. 11. : 계약신고 (주)○○○○산단 → (주)○○건설 - 3년5개월28일
지연

○ 과태료 부과경위

- 2021. 4. 6.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검토보고(10~21. 2월분)
- 2021. 4. 8.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사전통지
- 2021. 4. 22. : 지연과태료 통보 지연 인지에 따른 납기일 연장요청
- 2021. 4. 23. : 과태료 부과 납부기한 연장 통보(4.22.→4.30.)
- 2021. 4. 29.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통보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021. 4. 30. : 시민옴부즈만 민원접수로 민원 처리 결과 통보시까지 행정
처분 유예

○ 과태료 부과현황

- (주)○○○○산단: 240만원
- (주)○○건설: 120만원

○ 신청인 (주)○○○○산단은 「충청남도 고시 제2026-21호(2016.1.18.)에 의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4블록(◆◆면 ◆◆리 가D1-1, BL D1-2, BL D2-1, BL D3-2)에 대해 (주)○○건설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2017.4.14.)을 체결하였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아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2020. 7. 9.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4블록 중 1블록(D1-1)이 (주)○○건설에서 자회사인 (주)*****로 2020. 6.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이루어지자 4블록 중 1블록(D1-1)만 2020. 7. 9.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음

- 2020. 10. 20. :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사전통지
- 2020. 11. 18. : 부동산 거래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서 접수 검토보고 후에 (주)○○○○산단에 240만원, (주)*****에 120만원 과태료 부과

○ 또한 신청인은 4블록 중 3블록(BL D1-2, BL D2-1, BL D3-2)에 대해 2020. 12. 11.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하였으며 부과경위를 살펴보면,

- 2020. 12. 11. : 계약신고 [(주)○○○○산단 → (주)○○건설]
- 2021. 4. 6.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검토보고 (10~21.2월분)

□ 판단

가.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나. 판단 내용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투기, 탈세의 원인 중 하나인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 관행을 방지하여 투명한 계약과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당시 60일) 이내에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매도인·매수인 공동의무) 하도록 되어있다. 신청인은 2017. 4. 14. ◇◇면 ◇◇리가 D1-1, BL D1-2, BL D2-1동, BL D3-2 토지 4블록을 (주)○○○○산단이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아산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나, 1필지(가D1-1)는 2020. 7. 9.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나머지 3필지(BL D1-2, BL D2-1, BL D3-2)는 2020. 12. 11.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각각 부과된 아산시의 과태료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신청인은 동일 거래 토지 중 권리 의무승계약이 이루어진 1블록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나머지 3블록은 추후에 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신고 일자를 다르게 한 것이 아니며, 토지개발 지구인 동일 지구 내 토지 거래로 계약일 및 매도·매수인이 동일한 거래이면 신고일이 달라도 1건의 과태료가 나오는 줄 알고 착각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적 정리 전 사업장내 공동주택용지가 모두 동일 물건이므로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구두 안내를 받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공무원의 언행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기를 바라는바 관련 규정에 의거 감경할 수 있으면 감경의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 결론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부동산 지연 신고 과태료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1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자진 납부 시 20%의 감경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하여 일부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합의 조정한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절차 이의 - 조정

□ 민원 요지

- ○○읍 ○○리 산◆◆-◆번지 소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관련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 신청 취지

- ○○읍 ○○리 산◆◆-◆(○○○)번지 소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관련하여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 행위에 대해서는 전달 받은 내용이 없었는데, 그때 즉시 부과하지 않고 지금에 서야 합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하여 비용부담 가중 발생하여 이의제기하며,
- 향후 위반건축물 시정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 주지 않은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에 민원을 제기함

□ 피신청인의 의견

- (○○과) 해당 사건은 ○○리 산◆◆-◆번지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요구하는 생활민원 신고로 인해 현장조사(2020. 6. 16.) 과정에서 적발된 부분이며, 위반행위 및 행위시기를 판별하여 처분사전통지하였음. 또한 건축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15조에 근거하여 최초 적발일을 기준으로 행정조치하였음.
- 시정의무자인 신청인 ○○○은 직접 ○○과를 수 차례 방문하여 ○○과 담당자가 위반사항과 시정방법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겠다고 하였음.

□ 사실관계

○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아산시 ○○과)

- 2020. 6. 17.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송달
(토지소유주, 조△△ 외 2인)
- 2020. 7. 2. : 의견제출서 제출
(토지 무단점유자인 신청인 김○○에게 시정의무자 변경 요청), 해당 점유 관련 소송중임을 확인
- 2020. 7. 2.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송달
- 2020. 9. 8.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2020. 11. 24.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021. 1. 11. : 시민옴부즈만 권유로 의견제출서(시정계획 및 시정기간 연장 요청서)작성 제출
- 2021. 1. 12. :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알림

○ 위반건축물 현황

위치	시정 의무자	위반행위 및 건축물					
		구분	위반 면적	구 조	용 도	행위시기	위반행위
○○읍 ○○리 산◆◆◆ (○○○)	김 ○○	①	130㎡	철파이프	창고	2011	불법신축 (건축법 제14조)
		②	18㎡	컨테이너	창고	2015	불법가설건축물축조 (건축법 제20조)
		③	8.75㎡	경량철골	창고		불법증축 (건축법 제14조)
		⑥	4.6㎡	컨테이너	창고	2020	불법가설건축물축조 (건축법 제20조)
		④	18㎡	컨테이너	창고	2016	불법가설건축물축조 (건축법 제20조)
		⑤	18㎡	조립식패널	창고	2018	불법신축 (건축법 제14조)
합계			197.35㎡				

○ 고충민원 상담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민원 제기
(신청인 김○○ → 시민옴부즈만) ' 21. 1. 5.

-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접수 후 ○○과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고충민원 접수 사실을 알린 후, 시민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민원 관련 정황을 파악
 - 면담 결과 해당 민원인은 감정이 격해져 ○○과 담당자의 의견 내용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시민옴부즈만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 청취 및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함)
 - 그리고 ○○과 담당자와 민원 대책 방안(시정 연장 가능)에 대하여 협의함
- 민원현장 확인(신청인, 시민옴부즈만 등 3명) ' 21. 1. 8.
 - 위반건축물 위치, 규모, 구조, 내부시설 등 확인
 - 민원인과의 면담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의사는 있지만 당장은 코로나 19 등 경제적인 부담과 겨울철 이동 곤란 등 위반건축물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
 - 이에 시민옴부즈만은 민원인에게 시정기간 조정·연장 등 실질적인 시정이 가능하도록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설득 권유
- 시민옴부즈만은 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과에 자료를 요청함 (2021. 1. 11.)
- 민원인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요청 의견서 제출(' 21. 1. 11.) →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3개월) 민원인에게 통지(○○과, 2021. 1. 12.)

□ 판단

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8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나. 판단 내용

- 이 민원에 대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피신청인(아산시 ○○과)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 내용 의견제출 통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내·고지 하였으나, 민원인은 시 행정에 대한 불만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 대하여 ‘예고’로 이해가 아닌 ‘바로 시행’으로 이해하여 이행강제금이 바로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과)와 대책으로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민원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행 가능한 세부 시정계획서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설득, 조정 함.
-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규정

□ 결론

- 시민옴부즈만은 피신청인(○○과)과 대책으로 위반건축물 시정 기간 연장 관련 협의 후, 신청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계획서 (의견제출서 : 기간 연장 포함)를 제출하도록 설득, 협의 조정함.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현장 조사>

주택건축 시 토지 기부채납 이의 - 최종 안내 종결

□ 민원 요지

- 주택 건축허가 시 진입로가 아산시에 과도하게 무상귀속(기부채납) 되었으니 구제해 줄 것을 요청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1997년 ○○동 ●●-●(595㎡) 단독주택(지상1층, 97.898㎡, 자연녹지-임야) 건축 시 도시계획 예정도로(대로3 - 12호)에 편입된 진입로(현, ○○동 ●●-●, 71㎡) 부지를 무상귀속(기부채납, 준공 후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 하도록 조건)하는 조건으로 주택신축을 아산시로부터 허가 받음
- 그러나 당시 신청인은 한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사가 설계해 대로 제출해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들어서 진입로 도로 폭에 대한 기준도 모른채 건축설계사가 설계한 그대로 시에 제출했다고 주장
- 이웃의 유사 건축물 허가 진입로의 경우 통상 무상귀속(기부채납) 너비를 4m 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다른 유사한 경우보다 진입로 폭이 넓게{71㎡ = 11m × 6.4545} 무상귀속(기부채납) 된 점은 과도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고충민원을 제기

□ 피신청인의 의견

- 민원 처리 경과
 - 1977. 2. 17. (이전)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로 최초 결정
 - 1993. 3. 17. 도시계획도로(대로3-12호)로 변경 결정
(이때 ○○동 ●●-●번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 ; 1993년 변경 결정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1997. 3. 소규모건축물 등이 건축신고 및 신고필증, 토지형질변경 허가 조건에 건축물 진입로 부지에 대하여 무상귀속 조건 명시 확인
- 1997. 11. 건축물 사용 승인
- 1997. 11. 22. 소유권 이전, 아산시로 권리귀속(등기원인)
- 1997. 12.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 1998. 1. 6. 아산시 등기 이전 접수(등기부등본 1648 - 1996-284855)
- 2020. 7. 30. 실시계획인가(아산시 고시 2020-3335), ○○과에서 도시 계획도로(대로3-12호) 공사 준비 중으로

○ 당시 주택의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어도 기부채납을 제한한 지침 전 이루어진 사항임

□ 사실관계

-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2021. 4. 5.)된 후 23년 전 자료조사 시작
 - ○○과 및 ○○○동 협조를 통해 기초 자료 수집 및 1차 현장 방문조사 실시: ○○○동 동장, 옴부즈만 2명, 옴부즈만 담당공무원과 함께 민원 장소 ○○동 ○○-○ 건축물 및 도로 현장 조사(2021. 4. 14.)
 - ○○과 2차 자료 제출 회신 (2021. 04. 26.)
 - ◎◎과를 통해 주택건축 시 관련 서류 사본 받음(2021. 04. 28.)
 - ○○과에 고충민원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 요청(2021. 5. 4.) → 개발행위에 따른 무상귀속(기부채납) 관련 당시 도시계획 및 관련 사례는 ㉠㉠㉠과, 혹은 ◇◇◇◇관 소관이라고 답변(2021. 5. 7.)
 - ◇◇◇◇관에 이 민원과 관련 유사 사례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2021. 5. 11.)
 - ㉠㉠㉠과(●●●●팀)에 도시계획(예정)도로(대로3-12호) 관련자료 등 협조 요청(2021. 5. 12.)

□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 「건축법」제2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구)「도시계획법」(2002. 2. 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도시계획법」(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43호)

제83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①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등 ;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도록 하며,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정정 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한다(제6절 2-6-1기반시설 운영기준).

나. 판단 내용

-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각 예정 도로를 말함(「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건축법」 제44조 제1항)
- 신청인은 1997년 ○○동 ●●-● 단독주택 신축 허가 과정에서 도시 계획 예정도로(대로3 - 12호)에 편입된 진입로(현, ○○동 ●●-●) 부지를 무상귀속(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에 건축물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시 신청인은 한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사가 설계해 준 그대로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택건축이 급한 마음에 진입로 기준도 모르고 설계사가 너비 11미터로 설계한 그대로 아산시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이의제기를 하기도 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를 **법정 기준**(도로 너비 4미터, 건축물 대지 2미터)으로 통상 진입로 면적을 최소화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당시 신청인의 경우 다른 유사 진입로 기준(너비)보다 넓게 책정되어 기부채납된 점이 있다.
- 부당 기부채납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 시행 중(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

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지양하도록 국토부 방침) 인 점 등을 검토한 바 통상보다 과도하게 기부채납 되었다고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집중 조사, 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검토·재검토한 결과 보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최종 : 안내 종결)

- 신청인의 “기부채납된 진입로 토지 일부 보상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소관 부서와 협의·재협의 진행 내용, 변호사·법학박사 등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미 기부채납되어 등기 이전이 완료된 토지를 다시 신청인에게 되돌려 줄 법적 근거 미비로 보상이 어려움을 최종 확인 하게 됨.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신청인에게 설명 안내 공유 후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함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현장 조사>

연 번	접수 방법	신청취지	처리결과
1	방문	· 신축건물 창문 빛 반사 관련 시정 요청	· 현장 확인결과 빛 반사 정도가 심해 불편 사항이 컸을 것으로 보였으며, 담당 부서와 감리, 건축사 등을 불러 민원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빛 반사의 피해가 없도록 빛 반사 방지필름을 붙이는 등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후 안내.
2	읍면동	· 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 요망	·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간은 충청남도에서 관할하는 지역이므로 시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부서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경찰 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정류장을 이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 후 안내.
3	읍면동	· 폐비닐 수거 창고 설치 요망	·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토지주의 사용 승낙만 받은 상황에서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것은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판단사항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안내.
4	읍면동	· 유기견보호소 주민 불편사항	· 해당 동물보호센터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센터 담당자에게 민원 사항을 통보하고 주변 청소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 였으며, 진행사항을 안내한 후 상담민원으로 종결

5	읍면동	· ○○아파트 상수도 설치 요망	· 신청인이 요청한 지역은 현재 상수도 설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상반기 안으로 설계·준공될 예정임을 담당 부서에 통보 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 후 종결.
6	읍면동	· ○○천 하천 정비 요망	· 향후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상의 중기계획 지구로 하천 정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을 안내.
7	읍면동	· ○○2통 노후화로 인한 택지개발 요청	· 현재 아산시에서는 2곳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우며, 향후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 및 변화를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안내.
8	읍면동	· ○○동 마을버스 운행 증설 요청	· 민원 검토 결과, 현재 신규버스 투입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 버스업체의 재정 여건 상 어려운 상황이며, 운행시간 및 횟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 대안책으로 해당 지역에 마중택시를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안내한 후 종결.
9	방문	· 사회적 협동조합 부당 해고 구제 신청	· 민원검토 결과, 위탁기관과 신청인 사이의 고용 간의 문제로 판단되어 읍부즈만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구제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
10	방문	· 고가도로 낙석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보상 요망	· 민원 조사 결과, 본 민원을 대상으로 국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한 사항임. 읍부즈만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이해를 구하고 상담 종결.

11	우편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청	·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 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 으로 검토하도록 안내 후 민원 상담 종결.
12	방문	· 무허가 건축물 해체 방법문의	· 민원 조사결과, 신청인이 철거를 원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었으며 안내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민원 안내를 하지 못하 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행정의 신뢰를 잃 게 만들었음. 옴부즈만은 신청인의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절차를 설명 안내함.
13	방문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재산세 면제요청	· 조사결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사전에 충분한 안내 를 통해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민원 응대할 것을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후 종결.
14	방문	·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근 거주자 피해 공사처리 요망	·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인의 고충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유연관 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안내.
15	읍면동	· 한해 대책용 관정 철거 요망	· 담당부서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여 폐관정 철거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읍의 건 의를 받아 폐관정을 철거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종결함.
16	방문	·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요청	· 현행법상 자경농민을 확인하는 서류를 충족 하지 못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종결

17	방문	·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에 따른 피해 민원	· 신청인과 점용권자의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의견을 전달하고 종결.
18	읍면동	· ○○2통 도시계획 도로 지정 요청	·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마을안길을 확포 장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며 신청인에게 안내
19	읍면동	· 신정호 주변 신축 전원주택 관리 대책 요청	· 개인 사유지로 일괄 개발 관리는 규제사항 이므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정책 수립 시 검토여부에 대하여 안내하고 종결.
20	유선	· 가설건축물 원상 복구 요청	· 사인 간의 관계로 발생한 민원으로 신청인이 요구 하는 시설물의 적법성 유무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안내하고 종결



(시민옴부즈만 ○○동 민원 현장 사진)



(시민옴부즈만 ○○면 민원 현장 사진)

불법 가림막 철거 요청 - 각하

□ 민원 요지

- 영업장 입구를 불법 가림막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으니 철거를 요구함

□ 신청 취지

- 前○○면장인 ○○○는 지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사촌 ●●●와 공모하여 자신의 영업장 입구를 불법 가림막으로 막고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으니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임.

□ 피신청인의 의견

- 아산시 ○○면 ○○리 ▶▶▶-▶번지 내 설치된 가림막은 당초 (4m) 불법 건축물 축조로 시정명령하여 규정에 맞게 2m이하로 철거하여 시정완료 (「건축법」제83조 및 「건축법시행령」제118조에 근거) 되었으며, 2m이하의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민원인이 제기한 영업방해, 가림막 철거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사료됨.

□ 사실관계 및 판단

〈불법 가림막 등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진행사항〉

- 2020. 9. 2. 현장 결과보고(상담민원으로 접수되어 현장확인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함)
- 2020. 10. 1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알림
- 2020. 11. 9.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020. 12. 21. 기간연장 요청 의견서 제출

- 2020. 12. 24.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검토보고(의견서 제출됨)
 - * 공작물 2m 이하로 철거 확인(시정완료)
 - * 의견서 제출에 따른 시정 기간 연장함(~ 2021. 4. 8)
- 2021. 3. 18.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종결
- 2021. 3. 31.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가림막” 철거 국민청원 제기

- 2021. 4. 9. 팩스로 고충민원 신청
- 2021. 4. 9. ○○과 그동안 진행사항 및 관련자료 제출 협조(유선)
- 2021. 4. 15. ○○면장에게 민원내용 전달
- 2021. 4. 15. 신청인과 이해당사자인 한○○씨의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 관련 문서사본을 ○○과로부터 받음
- 2021. 4. 16. 아산시 ○○면 ○○로 □□번길 □□ ◇◇◇◇◇◇◇◇◇◇ 현장을
확인한 후 고충을 제기한 신청인과 면담 (○○면장 동행)
- 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산시 ○○면 ○○리 ◎◎◎-◎번지 한○○의
사도와 근방 토지를 이용하여 건축물 신축에 활용하고 바로 뒤편에 있는
토지에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사용 흙을 가져다 부어 주기로 하였는데
신청인이 밭으로 사용할 흙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 자갈 등이 섞인 흙을
부어 주어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대화 태도에 마음이
상한 한○○씨는 2020년 8월경 신청인의 건물 바로 앞 사도에 4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하여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하며,
- 신청인은 8월 말 시청에 상담민원으로 위반건축물(불법 증축 및 불법공
작물 축조)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과에서는 2020. 9. 2. 현장
결과보고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20. 11. 9.
위반건축물 시정 재촉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20. 12. 24.
위반건축물 2m이하로 철거를 확인한바 있음.
- 2m이하로 철거된 가림막은 「건축법」 제8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으로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인 간의 권리관계 사안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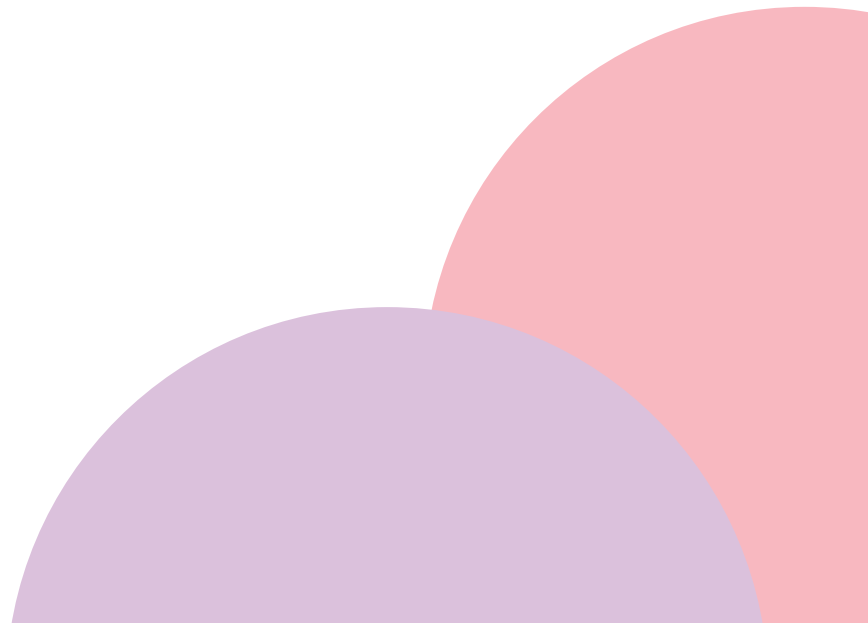
-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2020. 9. 2. 14:00경 한○○씨의 큰 강아지가 며칠째 돌아다닌다고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한○○씨가 목줄을 착용하고 집안에 들어놓는 것으로 현장 종결사례 등 갈등 지속,
- 그리고 2020. 3. 31. “영업장 입구를 막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혐오스러운 ‘가림막’을 제발 철거하여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을 게시하여 양 사인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 이에 시민옴부즈만은 현 ○○면장과 함께 민원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과 대화를 나눴으며 신청인은 신청인 건물 뒤쪽에 살고있는 한○○씨가 상가건물 바로 옆에 흉한 가림막을 설치하여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서로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를 구제하고자 진정, 고발 등으로 인해 갈등의 폭은 더욱 커졌다고 판단됨.
- 전 ○○면장인 △△△이 사촌형 한○○과 협의하여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만 있었을 뿐 한○○이 감정이 상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함
- 또한 시 ○○과장은 신청인에게 사도에 설치된 가림막을 철거와 관련하여 사인간에 감정이 격화된 문제로 대화를 통하여 잘 해결되도록 조언을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여 ○○과에서는 한○○씨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미 조치를 하고 완료한 상태임
- 시민옴부즈만은 비록 사인 간에 발생한 민원이라도 대화로 원만하게 풀기를 기대하며 갈등 조정을 시도 해 보았으나 한○○가 응하지 않은 등 여전히 갈등이 심한 상황임

□ 결론

- 본 사안은 사인 간의 권리관계 사안으로 고충민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제43조제1항7호 및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8호에 따라 “각하” 처리함.



IV 참고자료

1. 보도자료
 2.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IV. 참고자료

1

보도자료

□ 시민옴부즈만 언론 보도자료

- 충남일보등 23개 언론사



HOME > 지역소식 > 충남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식 가져

✎ 유명환 기자 | ⓒ 승인 2020.12.30 14:47

| 오세현 시장, 시민권익 보호 큰 역할 기대



30일 오세현 아산시장(가운데)이 이상득(왼쪽)·신동택(오른쪽) 옴부즈만 위촉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아산시는 30일 시민 옴부즈만 위촉식을 갖고 초대 옴부즈만 2명을 위촉했다

아산시, 시민권익 위해 충남 최초 '시민 옴부즈만' 운영

입력 2021-02-09 15:15



민원 현장에 나온 시민 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권리침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달 1일 충남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 조정 및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감구 권고 등이다.

시는 아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출신 2명을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2년간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고충민원 접수는 시청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접수할 수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접수된 6건의 민원 가운데 1건은 조정, 3건은 상담 완료했으며 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 권익 옹호 활동 경력, 행정 경력이 풍부한 옴부즈만으로 활동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잘 조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민관 갈등의 조정, 중재자로서 시민 옴부즈만의 활발한 활동과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시민 권익이 향상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 충남 최초 도입 '시민 옴부즈만' 권익보호 활동에 앞장

기사승인 [2021-02-09 08:58]



시민 옴부즈만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경청하는 모습 /제공=아산시

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아산시가 충남 최초로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정 등 시민 권익 보호 활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민이 행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이다.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혁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2인은 2년 동안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아산시 충남 최초 '시민 옴부즈만' 도입

▲ 정육환 기자 | © 승인 2021.02.09 13:32

| 시민 권익보호 활동 기대



충남 아산시가 충남 최초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월1일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의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 해결 하러 읍면동 찾아간다

최진규 기자 | 승인 2021.02.16 16:28



아산시청 전경

(아산=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민의 권익 보호 구제를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시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시민의 고충을 듣고 풀어나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고충민원 현장 상담은 ▲3월 3일 온양4동 ▲3월 17일 영인면 ▲3월 31일 염치읍 ▲4월 14일 온양1동 ▲4월 28일 배방읍에서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5.14 조례 제19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성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옴부즈만” (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 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옴부즈만의 위촉 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최근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의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산시의회회의 동의를 얻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하거나 했던 사람

③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을 도모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
4.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 1명
5.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중 3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무의 독립성)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보수)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2.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집단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8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7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10조(해촉) 시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1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겸직 등의 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제9조의 직무 관할 대상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이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에의 통보)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로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소속기관 등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소속기관 등은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옴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 소속기관 등은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 신청인에의 통지) 옴부즈만은 소속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제20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지원

제23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인력 및 예산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07.15 규칙 제7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 옴부즈만) ① 시민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보수 등)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근무일) 조례 제8조에 따른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근무일로 하되 옴부즈만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근무시간) 조례 제8조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6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 조사제외 등 통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옴부즈만이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3조(고충민원 조사결과와 통보)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4조(조치의 통보)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권고(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시 소속기관 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게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 통보서에 따른다.

제15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

제16조(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7조(공인의 사용) ① 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아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보고와 공표 등을 할 때에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아산시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2009.05.06 훈령 제304호
 (일부개정) 2013.10.07 훈령 제394호
 (일부개정) 2017.10.16 훈령 제462호
 (전부개정) 2020.06.15 훈령 제5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아산시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아산시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아산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여러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주의, 훈계 및 경고(기관 및 부서 경고를 포함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아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

제4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①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각 호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면책대상 제외)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 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와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심사 처리)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위원회는 면책심사 안건의 심의·의결 시 해당 건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양정을 정한 후 면책심사를 진행한다.

제9조(심사결과와 처리) ①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면책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면책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당초 감사결과 처분양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국가적인 위기·재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1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은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경고는 기관장(부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훈계와 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2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3조(처분사유)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게을리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반축을 받은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4조(처분권자) 경고 등 처분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기록유지) 위원장은 면책결과와 경고 등 처분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이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변동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훈령 제51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